

그레고리(Daniel S. Gregory)의 『도덕학』(1915)에 나타난 ‘3중적 결혼의 원리’, 그리고 『長老教會婚喪禮式書』(1924)와 『朝鮮예수敎長老會憲法』(1922)과의 상호 접목

안수강 (백석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첫 번째 원리: 부부간 약속으로서의 결혼
 - 1. 그레고리의 ‘5중적 약속’ 논증
 - 2. 조선말과 일제강점기의 결혼 연령
 - 3. 『長老教會婚喪禮式書』 및 『朝鮮예수敎長老會憲法』과의 상호 접목
- III. 두 번째 원리: 부부간 일부일처제 결혼
 - 1. 그레고리의 ‘일부일처제’ 논증
 - 2. 조선의 축첩제도(蓄妾制度)와 외국인들의 반응
 - 3. 『長老教會婚喪禮式書』 및 『朝鮮예수敎長老會憲法』과의 상호 접목
- IV. 세 번째 원리: 부부간 평생 의무로서의 결혼
 - 1. 그레고리의 ‘종신(終身)의 의무’ 논증
 - 2. 그레고리의 ‘결혼 후 부부의 3중적 의무’ 논증
 - 3. 『長老教會婚喪禮式書』 및 『朝鮮예수敎長老會憲法』과의 상호 접목
- V. 나가는 말: 현재적 시사점들

• ABSTRACT •

The Triple Principle of Marriage in Daniel S. Gregory's *Christian Ethics*(1915), and It's Mutual Connection with *Forms of Marriage and Burial*(1924) and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1922)

Lecturer, Ahn, Su-Kang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iple principle of marriage in Daniel S. Gregory's *Christian Ethics*(1915), and it's mutual connection with *Forms of Marriage and Burial*(1924) and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1922). The key poin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 attempted to explain 'marriage as a promise between couples' such as the bride and groom's free will, the injustice of incestuous marriage, a healthy body and mind, the husband's ability to lead the family, and the love between couples. Secondly, I concentrated on significant points for 'a monogamous marriage between couples' such as true love between couples, family education, family peace, child rearing, order of creation, and marriage in the Lord. Thirdly, I treated with 'marriage as a lifelong obligation between couples' such as lifelong covenant, marital integrity, love, and cooperation. Fourthly, I suggested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oday's Korean Christians such as the divorce problem, marriage theology, marital theology, and home theology.

Key words: Daniel S. Gregory, *Christian Ethics*, *Forms of Marriage and Burial*,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The Triple Principle of Marriage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에서는 미북장로교 파송 선교사 스왈런(William L. Swallen, 1865-1954)이 1915년에 번역하여 평양신학교에서 강의교재로 활용했던 그레고리(Daniel S. Gregory, 1832-1915)의 『도덕학』(*Christian Ethics*)¹⁾을 중심으로 그가 논증한 ‘3중적 결혼의 원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후 장로교 총회에서 다소 뒤늦게 발행한 『長老教會婚喪禮式書』(1924)와 『朝鮮예수敎長老會憲法』(1922)²⁾과의 상호 접목을 살펴 비교분석할 것이며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적 시사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19세기 말 개화기에 복음을 수용한 초기 한국기독교인들은 이전 세대에 전혀 체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윤리체제에 직면했다. 이로써 고려 말부터 당시까지 생의 전반(全般)을 지배한 유교 성리학과 성경의 가르침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상당 기간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그 당시 한국에서의 인권 이해는 유교사관, 사대(事大)의 논리에 기초된 신분질서, 유교의 관행과 체제에 입각했다. 유교는 13세기 말 성리학 체계로 전래되어 조선 건국과 더불어 숭유(崇儒)의 이념으로 뿌리내렸다. 그리하여 삼강오륜(三綱五倫), 수기치인(修己治人), 인의예지(仁義禮智) 등을 가장 큰 덕목으로 정립했으며 천륜과 인륜의 근간이자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³⁾ 이러한 정황에

1) 다니엘 S. 그레고리, *Christian Ethics*, 윌리엄 L. 스왈런 역, 『도덕학』(평양: 조선예수교장로회, 1915). 이 한글판 역본은 한 단 내려쓰기 방식이고 본문의 분량은 195쪽이다. 원서명은 *Christian Ethics: The True Moral Manhood and Life of Duty-a Text-book for Schools and Colleges*이고 Eldredge & Brother에서 발행했다. 이후 각주에서는 『도덕학』으로 표기한다.

2) 朝鮮예수敎長老會, 『長老教會 婚喪禮式書』, 1924; 朝鮮예수敎長老會, 『長老教會 婚喪禮式書』(경성: 조선기독교창문사, 1925). 처음 발행된 1924년 판 서지정보 불기. 이후 각주에서 1924년판은 『長老教會 婚喪禮式書』로 표기한다. 찰스 A. 클락 편, 『朝鮮예수敎長老會憲法』(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22). 이후 각주에서는 『朝鮮예수敎長老會憲法』으로 표기한다.

서도 일제강점기에 기독교윤리가 착근할 수 있었던 것은 본고에서 고찰할 그레고리의 저서 『도덕학』을 비롯하여 1920년대 맥도날드(D. A. McDonald)의 『기독교사회사상』(*The Social Idea of Christinity*, 1926),⁴⁾ 스토키(James Stalker)의 『그리스도 윤리표준』(*The Ethics of Jesus*, 1929)과 『그리스도 모범』(*The Example of Christ*, 1929),⁵⁾ 1930년대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ch)의 『야소의 사회훈』(*Social Principle of Jesus*, 1930),⁶⁾ 기독교 철학자 한치진의 『基督教人生觀』(1934),⁷⁾ 솔타우(Theodore S. Soltau)의 『신자생활의 첩경』(*A Straight Road to Christian Truth*, 1936)⁸⁾ 등 기독교윤리 관련 저작들이 보급되어 기독교윤리의 초석을 다졌기 때문이다. 서구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된 구한말 시기부터 내한 선교사들과 한국인 기독교 교역자들은 무엇보다도 윤리 개혁을 위해 거룩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가령, “음담패설의 악덕 일소, 금주금연, 축첩 금기, 노비 해방, 반상 구분 폐지, 데릴사위제와 민며느리제 금지, 조혼 및 수양남매 결연 혁파, 노름 및 기방 출입 엄금, 마약 퇴치 등”⁹⁾ 고질적인 사회 문제들을 제기하고

3) ‘치인(治人)과 ‘수기(修己)는 유교이념으로 통치하는 가장 이상적인 배경이 된다. 안점식,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인간성 이해와 이에 대한 기독교 철학적 성찰-세계관의 스펙트럼과 세계관 변화의 관점에서,” 『ACTS 신학저널』 27(2016), 81.

4) D. A. 맥도날드, *The Social Idea of Christinity*, 최상현·김관식 역, 『기독교사회사상』(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26).

5) 제임스 스토키, *The Ethics of Jesus*, 김필수·오천영·윌리엄 M. 클락 역, 『그리스도 윤리표준』(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29); 제임스 스토키, *The Example of Christ*, 김필수·오천영·윌리엄 M. 클락 역, 『그리스도 모범』(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29).

6) 월터 라우센부쉬, *Social Principle of Jesus*, 고영환 역, 『야소의 사회훈』(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0).

7) 한치진, 『基督教人生觀』(경성: 철학연구사, 1934).

8) 테오도레 S. 솔타우, *A Straight Road to Christian Truth*, 『신자생활의 첩경』(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6).

9) 안수강, “정경옥(鄭景玉)의 실용주의(實用主義) 신학 분석,” 『기독교사회윤리』 43(2019), 156.

실천 그 자체를 가장 이상적인 해법으로 여겨 모범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다.

그레고리는 1857년 프린스턴대학교를 졸업한 후 1859년부터 1860년까지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신학을 수학했다. 이후 1871년 오하이오주 우스터대학에서 형이상학 담당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으며 1875년에 윤리학 명저인 *Christian Ethics*을 저술했다.¹⁰⁾ 이장형은 이 문헌을 “한국 기독교 윤리학(장로회 중심)의 출발점”¹¹⁾이 되는 주목해야 할 저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장로교총회에서는 1922년 혼례예식 지침이 포함된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을 발행했고, 1924년 혼상례 관련 첫 예식서인 『長老教會婚喪禮式書』를 간행했다. 이듬해 1925년에 간행된 『長老教會婚喪禮式書』에 수록된 혼례예식에 관한 지침은 1924년 판과 비교하면 수정 혹은 증보된 내용은 없고 “序文” 앞에 예식위원 박문찬의 “元書”가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총회에서 공인하여 보급한 예식서임을 밝히기 위해 두 문헌 “序文”에 “우리 총회에서 예식위원을 선거하여 혼상예식(婚喪禮式)의 통례(通例)를(중략) 통과(通過)하고 이에 간행하노니”¹²⁾라는 문장을 기술했다. 1922년에 발행된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에는 예배모범 혼례조례 규정에 “혼례는 성례가 아님(제1항), 혼인 집행자의 자격(제2항), 일부일처제(제3항), 혼인적령기(제4항), 혼인의 강제성 문제(제5항), 법 저촉 여부(제6항), 증인의 동반혼인증서 교부(제7항), 혼인명부(제8항)”¹³⁾ 등의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1910년대 중반, 결혼관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독보적인 교재가 『도덕학』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후 1920년대에 헌법과 예식서를 작성할 때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서 이 문헌을 심분 활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10) 이장형, 『기독교윤리학의 한국적 수용과 정립』(성남: 북코리아, 2016), 121.

11) 위의 책.

12) 『長老教會婚喪禮式書』, 2(박승봉의 “序文”).

13)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 222-225.

실제 『도덕학』에 기술된 원리들이 헌법과 예식서에 오롯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며, 이 논점은 본고에서 살펴볼 핵심적인 사안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하여 숙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선행연구의 빈약성이다. 그레고리의 『도덕학』, 『長老教會婚喪禮式書』,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 등과 관련하여 ‘결혼의 원리’는 연구가 추진되지 않았고, 이 문헌들은 초기 기독교윤리 관련 저작들의 모체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이장형은 2009년 “한국기독교 초기 윤리학교과서 문헌해제 및 한국적 수용과정 연구”¹⁴⁾서 간략하게 이 문헌을 해제하여 소개했고 안수강은 2023년 “그레고리(Daniel S. Gregory)의 『도덕학』에 나타난 ‘부모-자녀 간 상호 삼중적(三重的) 의무’ 분석”¹⁵⁾을 논했다.

둘째, 시사성 있는 주요 논점들을 분석하여 현재적 의의를 모색해야 한다. 이 문헌들은 한국기독교의 초기 윤리관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시의성을 갖춘 지침서로서 탁월한 가치가 있다. 가령 결혼과 관련하여 진술된 중요한 주제들로서 결혼당사자들의 의사, 근친 결혼문제, 건전한 심신(心身), 부부의 대의와 정조, 남편의 역량, 부부간 과업들, 사랑으로 결속된 가정, 신앙고백적인 결혼관, 신앙과 결혼의 상관관계, 한 인격체로서의 부부, 언약에 뿌리를 둔 결혼관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레고리(Daniel S. Gregory)의 『도덕학』(1915)에 나타난 ‘3중적 결혼의 원리’, 그리고 『長老教會婚喪禮式書』(1924)와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1922)과의 상호 접목”이라는 제하에 하위 주제들을 별개

14) 이장형, “한국기독교 초기 윤리학교과서 문헌해제 및 한국적 수용과정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18(2009), 317-351.

15) 안수강, “그레고리(Daniel S. Gregory)의 『도덕학』에 나타난 ‘부모-자녀 간 상호 삼중적(三重的) 의무’ 분석,” 『신학과 실천』 86(2023), 633-673.

의 장(章, 2~5장)들로 편성했다. 제2장에서는 ‘부부간 약속으로서의 결혼’, 제3장에서는 ‘부부간 일부일처제 결혼’, 제4장에서는 ‘부부간 평생 의무로서의 결혼’ 등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제5장 마무리 단계에서는 적용적인 취지에서 ‘현재적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용문은 가독성을 고려하여 현대 문체로 고쳤으며 비문(非文)과 난해한 문장은 원문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운문하거나 [연구자 주]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곁들였다.

II. 첫 번째 원리: 부부간 약속으로서의 결혼

1. 그레고리의 ‘5중적 약속’ 논증

그레고리는 결혼의 첫 번째 원리로 ‘혼인하는 것은 곧 약속(約束, 約條)’이라는 규범적 정의(normative definition)를 들었다. 그는 신랑신부의 성경적 결혼을 보증하는 신성한 약속들을 다섯 조항으로 정선했다. 이 다섯 조항에는 결혼준령기에 이른 신랑신부가 자유의사로 결혼해야 한다는 점, 근친결혼(近親結婚)은 불가하다는 점, 부부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몸과 마음이 온전해야 한다는 점, 남편이 ‘건사’ 즉 아내와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 그리고 결혼당사자들이 결혼 전에 소통하여 서로를 알고 있어야 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어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혼인하는 것은 곧 약조라. (중략) 성경의 뜻대로 하려면 마땅히 미리 몇 가지 갓출 요건들이 있으니 (1) 임의로 할 것: 혼인할 자가 임의로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억지로 혼인시키는 것은 합당치 않고 또한 혼인할 자는 과년(過年: 나이가 참-연구자 주)이 되어야 할 것이요, (2) 근친은 피할 것, (3) 병신은 말 것: 심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병신

이 되어 능히 부부의 직분을 담당하지 못한다면 합당치 못해 혼인하지 못할 것이요, (4) 남자가 혼인한 후에 처자를 능히 건새건사란 자기에게 딸린 것을 잘 보살피고 돌본다는 뜻-연구자 주할 수 없으면 합당치 아니할 것이요. (중략) (5) 피차 사랑할 것: 부부가 될 사람들은 미리 알고 합해야 온전할 것이다.¹⁶⁾

다만, 그레고리는 이 다섯 조항들 중 몸과 마음이 온전할 것과 결혼 후 남편이 처자식을 양육하고 돌보는 능력은 결혼하기 이전에 미리 구비해야 할 선행요건들이라고 했다. 다만 결혼한 이후에 혹 이 사안들과 관련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코 이혼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언급했다. 즉 이미 결혼예식을 마친 경우 그 결혼은 추후 부부간 변경할 수 없는 항존적(恒存的) 약조라는 점에서 평생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셋째[온전하지 못한 심신-연구자 주와 넷째 혼인 후 건사의 책무-연구자 주]는 혼인하기 전에 상관된 것이요, 혼인한 이후에는 영원토록 변치 못할 것이라.”¹⁷⁾

2. 조선말과 일제강점기의 결혼 연령

조선시대에는 3년에 한 번씩 면(面), 리(里)의 행정 단위로 호적대장을 작성하여 인구수를 조사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조세 징수와 군역 부과, 인적 자원, 치안 유지, 기타 다양한 삶의 면모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박희진의 연구에 의하면 17세기 평균 결혼나이로 여성은 17.75세, 남성은 17.31세, 18세기에는 여성은 17.67세, 남성 16.84세이다.¹⁸⁾ 일부 지역의 통계 수치이기는 하지만 김건태가 연구한 18세기 경상남도 산

16) 『도덕학』, 163-164.

17) 위의 책, 164.

18) 박희진, “양반의 혼인연령: 1535-1945-혼서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40(2006), 12-13.

청(山淸) 단성현(丹城縣) 지역 호적대장(戶籍大帳)에 의하면 결혼나이와 관련하여 여성의 초혼 평균 나이는 17.5세, 17세기부터 18세기 사이의 남성의 초혼 평균 나이는 18세로 나타났다.¹⁹⁾

19세기 들어 개화파 인사들이 남녀 결혼적령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으로 개화가 착수된 1880년대부터였다. 그 일례로 1886년 3월 『漢城周報』(최초의 근대적 신문인 『漢城旬報』의 후신)에는 “각 나라의 남녀가 일찍 혼인하는 일로써 큰 폐단이 있음을 염려하여 백 가지로 금단(禁斷)하여”²⁰⁾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 때에는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취지로 결혼나이의 하한선을 법제화했는데 그 이전에 비해 남성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남성은 20세, 여성은 16세로 정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1890년대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에는 점차 조혼풍속을 비판하는 논자들이 점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논조들은 후일 지성인들이 조혼 타파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해가는 이론적인 단초로 작용했다.²¹⁾

이순택은 일제강점기인 1931년 YMCA 기관지 「靑年」에 사회과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최근 조선의 평균 결혼연령 연구”를 발표했는데 1928년 조선총독부 통계부의 자료를 토대로 서양인들과 한국인들의 결혼 나이를 비교하여 고찰했다. 그는 한국인 평균 결혼나이가 남자는 22.8세, 여자는 19.9세로 2.9세 차이이지만 서구 선진국들은 남자가 29세, 여자가 25세로 4년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에서도 차츰 이 추세에 순응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²²⁾ 이 통계에 비추어볼 때 1930년대에는 조혼 풍습

19) 김진태, “18세기 초혼과 재혼의 사회사·단성 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1(2004), 197-209.

20) 박경, “개화 지식인들의 조혼(早婚)에 대한 인식·『독립신문』의 논설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16(2012), 72. 재인용.

21) 위의 논문, 90-91.

이 그 이전 개화기 당시에 견주어볼 때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長老教會婚喪禮式書』 및 『朝鮮에수敎長老會憲法』과의 상호 접목

1924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보급한 『長老教會婚喪禮式書』에 의하면 그 레고리가 제시한 5중적 약속 조항들 중 각별히 제1항 결혼 당사자들의 결혼 의지와 연령, 제3항 근친결혼, 제5항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성에서 상호 접목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결혼 당사자들의 연령을 중시하여 종래의 조혼 풍습이 합리적이 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주혼자(主婚者) 즉 양가의 부모가 자녀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권하여 혼인을 종용해서는 안 되며, 결혼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혼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연령이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교회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서 두 집안의 민적등본(民籍謄本, 호적등본) 혹은 교회에서 발행한 당회보증서(堂會保證書)를 통하여 결혼 요건에 흠결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혼인증서에는 주혼자와 행례자(行禮者, 신랑과 신부), 해교회(該教會)의 주례목사 등 전원이 일괄 서명하여 신랑과 신부가 한 통씩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고 했다.

혼인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요 천정배필(天定配匹)하늘이 정한 배필 연구자 주이라. 그러므로 신자는 마땅히 성경에 교훈한 부부일체의 오의(奧義) [오묘한 의미-연구자 주]를 심실(深悉)[깊이 탐구함-연구자 주]하여 신덕(信德)을 상제(相齊)[피차 구비함-연구자 주]하고 연기(年紀)가 즉장(卽長)[결혼적령기-연구자 주]한 자로 성혼(成婚)하게 하되 (중략) 이성(二姓)이 합하여 일여 지성친이부부(一與之成親而夫婦)[결혼하여 남편과 아내가 됨-연구자 주]이면

22) 이순택, “최근 조선의 평균 결혼연령 연구,” 『青年』 11/5(1931), 6-9.

종신(終身) 불개(不改)하니 (중략) 강제로 작혼(作婚)할 수 없다. (중략) 주례자가 반드시 신혼인(新婦人)의 양방(兩方) [신랑신부-연구자 주] 민적등본이나 또는 해당 당회보증서를 접수 및 조사하여 확실하고 의심할 것이 없으면 예식 집행을 허락할지니라. (중략) 혼인증서는 예식을 행하는 당일에 정중하게 수속(手續)하게 하되 주혼재양가의 부모-연구자 주와 행례자(行禮者)와 주례자가 각기 서명 날인하고 신랑신부가 각자 한통씩 보관하여 영구히 확실한 증명으로 삼을지니라.²³⁾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 예비모범 혼례조례 규정 제4항에서는 “남녀가 각각 상당한 연령(결혼적령기-연구자 주)에 이르러 저희 마음대로 작정할 지니”²⁴⁾라고 규정하여 종래의 조혼풍습을 폐지하고 성숙한 나이에 자의적 결단으로 결혼하도록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근친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長老教會婚喪禮式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없지만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 예비모범 혼례조례 규정 제3항에서는 성경에서 규정한 혈족(血族)의 범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성경에 금한 혈족 범위 내에서는 결혼하지 못할 것이니라.”²⁵⁾

둘째, 신랑과 신부 결혼 당사자들이 인격적이며 자발적인 사랑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 즉 종래의 관행에 따라 부모 혹은 외부인들의 강요, 정략적인 결혼, 또는 인정에 이끌린 불행한 결혼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신랑신부의 자의적인 결단을 확인했던 것이다. 혼례절차는 “① 개식(開式), ② 찬송, ③ 기도, ④ 식사(式辭), ⑤ 성경낭독, ⑥ 설명(혼례의 원리), ⑦ 서약(신랑신부), ⑧ 신물증여(信物贈與) [가령, 반지나 시계 등-연구자 주], ⑨ 기도 및 공고(公告), ⑩ 광고·축전(祝電)·축전(祝箋)

23) 『長老教會婚喪禮式書』, 1-3.

24)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 223.

25) 위의 책.

및 타사(他事), ⑪ 찬송, ⑫ 축복(주례목사), ⑬ 증서 교환과 폐식(閉式)²⁶⁾ 등 총 1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중 제7단계인 ‘서약’ 순서는 다시 다섯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총 13단계 절차가 기록된 11면의 분량 중 절반 이상인 6면을 차지할 정도로 길게 상술되어 있다.²⁷⁾

서약순서 제1단계에서 주례자는 신랑신부에게 자발적인 결혼인지 혹은 강압에 의한 결혼인지를 질문하여 ‘명언(明言)할 사단(事端)’ 즉 당사자의 소신을 밝히도록 권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²⁸⁾ 이는 『朝鮮예수敎長老會憲法』 예배모범 혼례조례 규정 제5항 “부모는 저희의 자녀로 하여금 저희의 원치 아니하는 것을 강제로 혼인하지 못할 것이며²⁹⁾”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제2단계에서는 신랑에게 신부를 맞이하여 평생 동실(同室, 같은 방을 사용함)할 것을 서약하게 했고, 제3단계에서는 역시 신부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서약하게 했다. 제4단계에서 주례자는 “신랑 모군(某君)(성명)이여, 그대의 아내된 신부 모씨(某氏)(성명)를 금일부터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라고 질문하여 다시 한 번 신랑의 서약을 받았고, 마지막 제5단계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신부에게 “신부 모씨(某氏)(성명)여, 그대의 가군(家君)된 신랑 모군(某君)(성명)을 금일부터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라고 질문하여 거듭 신부의 서약을 받아 양가와 하객들에게 확증하는 절차를 두었다.³⁰⁾ 이렇듯 당시 무려 5회에 걸쳐 확인하던 서약의 관례는 오늘날 “신랑(신부) ○○○군(○○○양)은(는) 지금 옆에 선 ○○○를(을) 하나님 앞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그대의 아내(남편)(으)로 삼아...” 이렇듯 정형화된 질문으로 단지 2회(신랑과 신부 각 1회) 확인하는 절차

26) 『長老敎會婚喪禮式書』, 3-13.

27) 위의 책, 6-11.

28) 위의 책, 7-8.

29) 『朝鮮예수敎長老會憲法』, 223-224.

30) 『長老敎會婚喪禮式書』, 10.

와 비교해볼 때 서약의 엄중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준다.

III. 두 번째 원리: 부부간 일부일처제 결혼

1. 그레고리의 ‘일부일처제’ 논증

그레고리는 결혼의 두 번째 원리로서 창세기 2장 24절과 마태복음 19장 5절에 근거하여 일부일처제를 들었다. 그는 남녀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창조의 질서에 귀속된다는 점을 들어 오직 일부일처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一妻多夫制)는 부부간의 사랑, 가정교육, 가정의 평화, 자녀 양육 등 모든 영역에 불합리한 폐단을 초래할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일부일처제에서 벗어난 체제는 남편 혹은 아내의 권위와 입지를 추락시켜 윤리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가령, 일부(一夫)가 다처(多妻)를 둘 경우 아내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마치 주인에게 예속된 여종들처럼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는 유일한 법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부일처제이며 만일 이 질서를 어길 경우 그의 뜻에 불순종하는 병폐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하나님께서 혼인의 예법을 세우실 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셨대창2:24; 마19:5-연구자 주. 그러므로 한 여자가 두 사람의 남편을 둔다거나 한 남자가 두 사람의 아내를 두는 행위는 합당한 일이 될 수 없다. (1) 일남일녀로 혼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2) 이 체제는 유익한 것이니 대개왜냐하면-연구자 주 일남일녀로 합하여야 서로 사랑하며, 교육하고,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일부다처일 경우 사랑을 끊으며, 평안을 누릴 수 없으며, 자식을 잘 양육하지도 못하며, 여인 [첩-연구자 주]을 낮은 종이 되게 할 뿐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기에 마땅하지 않다.³¹⁾

일부일처제의 결혼은 창세기 2장 24절과 마태복음 19장 5절에 기록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이 말씀에 단초를 둔다. 이 구절에 대해 칼빈(John Calvin)은 결혼이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결합되어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³²⁾ 헨리(Matthew Henry)는 남편 입장에서 아내는 부부 사이에 출생한 슬하의 친자식들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한층 더 가까운 사이이며 자기 아내가 곧 자신이라는 신비를 함축한다고 해석했다.³³⁾ 박윤선은 이 구절이 일부일처라는 부부지도(夫婦之道)의 근간을 이루는 도덕성이자 창조 질서에 근거된 진리를 보여준다고 했다.³⁴⁾ 결국 이 두 구절은 일부일처제만이 성경적 결혼이라는 진면목을 보여준다.

2. 조선의 축첩제도(蓄妾制度)와 외국인들의 반응

조선 초기 사대부는 한 사람의 본처를 두었고 그 외의 아내들은 정식 아내가 아닌 소실로 규정하여 명목상으로는 일부일처제라고 간주했다. 이로써 ‘예무이적(禮無二嫡) 즉 한 남자가 두 사람의 적처(嫡妻)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입각하여 비록 남자에게 여러 명의 첩이 있더라도 적실을 한 사람만 둔다면 이를 일부일처제라고 합리화했다. 즉 첩은 아내의 반열에 입적(入籍)되지 않는다고 간주했던 것이다. 조선 초 신진 사대

31) 『도덕학』, 164.

32) John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Genesis (I)*, trans. John King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48), 136.

33) Matthew Henry, *Matthew Henry's Commentary: Matthew to John*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Company, n.d.), 269.

34) 박윤선, 『창세기출애굽기 주석』 (서울: 영음사, 1974), 99.

부 계층에서 다처제(多妻制)의 비행을 비판하고 중혼(重婚)을 폐지하려는 동향이 있었지만 고려 말기 다처병축(多妻並畜) 즉 동일한 계층의 첩들을 두는 관행이 정착되었고 양반은 여러 명의 첩실을 두었다.³⁵⁾ 태종 재위 13년 유처취처(有妻娶妻, 아내가 있는데 또 아내를 취함)를 금하는 법이 제정되어 중혼을 금했지만³⁶⁾ 첩실은 적실의 범주에 들지 못했기에 축첩 행위는 문제될 것이 없었고 이러한 관행은 조선 말엽까지 장기간 지속되었다.

19세기 말 서양문물을 접하는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축첩문제에 대해 주목할 만한 각성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철종의 부마(駙馬) 박영효(朴泳孝)가 주장한 부부의 동등성과 아내의 천부적 인권론, 동시대 언론가이자 소설가였던 이해조(李海朝)가 아내의 투기를 종래의 칠거지악(七去之惡)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 내면에서 우러나는 솔직한 감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을 들 수 있다.³⁷⁾ 한국에서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확고하게 제정되어 시행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2년 12월에 공포되어 1923년 7월에 발효된 조선후적령(朝鮮戶籍令)과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 개정을 통해서였으며 이로써 법률혼주의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³⁸⁾

대한제국 시기에 내한하여 한국인들의 문화를 탐구한 외국인들과 선교사들은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축첩제도에 큰 관심을 가졌다. 미북감리교 파송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는 1887년 4월 27일 일

35) 이성임, “조선시대 양반(兩班)의 축첩현상(蓄妾現象)과 경제적(經濟的) 부담,” 『고문서연구』 33(2008), 322.

36) 김영, “한일 고대의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新猿樂記』의 〈次の妻〉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11(2009), 19.

37) 전미경, “개화기 축첩제 담론분석,” 『가정과 삶의 질 연구』 19/2(2001), 73-74.

38) 홍양희, “식민지 조선에서 일부일처 법률혼과 이혼 소송에서의 ‘축첩’ 문제: 제국 일본의 사례와 관련하여,” 『역사연구』 51(2024), 265.

기에 평안감사 관아에 속한 무관(武官)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눈 대목을 기록했는데 조선 사대부는 적실 본처와 더불어 수하에 여덟 명의 첩실을 더 둘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 “그가 첩에 대해 말할 때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 마치 동물과 같다.”³⁹⁾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축첩 문화에 대해 수심(獸心, 짐승의 마음)을 지닌 패역 부도한 문화라고 지탄했다. 본래 엄격한 청교도 가문에서 성장했던 아펜젤러로서는 성경적 인륜의 관점에서 추호라도 조선의 축첩문화를 용인할 수 없었다. 1894년부터 수차 내한하여 한국의 문화와 풍습을 탐사한 영국의 지리학자이자 작가인 비숍(Isabella B. Bishop)은 자신의 탐방기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rs*)에 축첩제도를 소개했다. 그녀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다소 느슨한 일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여성을 남성 수하에 묶어두어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비인륜적 폐단이라고 비판했다. “축첩은 관습적으로 인정되고는 있지만 중국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인이나 집사를 고를 때처럼 남자의 아내나 어머니가 첩을 고르는 일이 드물지 않다. 너그러운본처의 속앎이-연구자 주 본처에게 있어서 첩은 남편의 재산이나 지위에 적절한 부속물로 간주된다.”⁴⁰⁾ 그리고 비숍은 한 조선 선비로부터 양반은 적실 본처와 혼인하더라도 사랑만큼은 후에 들인 첩실과 나눈다는 회화적 알음장에 아연실색했다.⁴¹⁾

3. 『長老教會婚喪禮式書』 및 『朝鮮 예수教長老會憲法』과의 상호 접목

일부일처제와 관련하여 박문찬 목사는 1925년 판 『長老教會婚喪禮式書』

39) 헨리 G. 아펜젤러, *Bring to the Light and Liberty*, 노종해 역, 『자유와 빛을 주소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57.

40) 이사벨라 B. 비숍, *Korea and Her Neighbors*, 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서울: 살림, 1999), 396.

41) 위의 책, 397.

앞부분에 편집한 “元書” 도입부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과 병립하여 특별히 가정설립에 주목했다. 짧은 분량으로 작성된 “元書”임에도 그는 의도적으로 “태초에 상제(上帝)[하나님-연구자 주 조인(造人)하시되 일남 일녀로 사지생육(使之生肉)하게 하시니[창 2:24-연구자 주]”⁴²⁾라는 문장을 별기하여 ‘조인(造人, 인간을 지으심), ‘일남일녀’, ‘가정생활을 한 지평 위에 유기적 정점들로 결속시켰다. 이는 ‘조인’, ‘일남일녀’, ‘가정생활’은 공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질서에 직결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로써 본래 가정의 출발점이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의 연합이 보여주듯 일부일처제라는 점을 설파하여 오랜 동안 인류역사에 착근해온 일부다처제의 타락상을 지적했다. 그는 이 “元書”를 통해 성경적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그리스도인들의 혼례 표준을 담은 성경적 예법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長老教會婚喪禮式書』 혼례조례 규정 제2항에서는 “이성(二姓)[남성과 여성-연구자 주]이 합하여 一與之成親而爲夫婦[한 번 결혼하여 부부가 됨-연구자 주]”⁴³⁾라고 하여 남성과 여성 양성이 일부일처로 결합된다고 확증했다. 그리고 혼례예식 다섯 번째 순서인 ‘성경낭독’에서는 가장 적절한 성경본문들로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를 선정하여 소개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기록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중략)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일평생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부부의 연을 맺어 정(情)을 다해야 한다는 도리를 규정한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기록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5장

42) 『長老教會婚喪禮式書』(1925), 1(박문찬의 “元書”). “元書”는 1925년판에 처음 수록됨.

43) 위의 책, 2.

25절에 기록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 구절들은 가정의 고유한 질서 정립과 사랑을 통해 하나로 결속되어야 한다는 부부지정의 원리를 제시해준다. 『長老教會婚喪禮式書』에 명시된 일부일처제의 부부윤리는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의 혼례조례 규정 제3항에서도 동일하게 혼인과 일남일녀를 접목하여 일부일처제의 당위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혼인은 다만 일남일녀가 합하여 됨이니라.”⁴⁴⁾ 또한 혼례조례 규정 제2항에서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명예를 메지 못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근거하여 마땅히 남편과 아내는 신자로서 ‘필주내(必主內)’ 즉 반드시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성도들은 필주내에서[신자들끼리의 결혼·연구자 주 결혼할 것이니 안수식으로 세운 목사나 다른 사역자로 저희들의 혼례를 주장하여 엄숙하게 행할지니”⁴⁵⁾

IV. 세 번째 원리: 부부간 평생 의무로서의 결혼

조선 초기에 도입한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 형법에 의하면 부부간 이혼 사유들은 동성혼, 근친혼, 중혼(본처), 건강을 속인 행위, 부인을 전당 잡히는 악행, 부모 상(喪) 중의 혼인, 죽을죄를 지은 여성을 부인 삼는 경우, 목민관이 비행으로 부인을 강탈할 경우, 관리가 악인(樂人)을 부인 삼는 경우, 승려 혹은 도사가 부인을 맞는 경우, 노비가 신분을 속여 양인과 결혼한 경우, 부인을 종용하여 다른 남자와 간통하게 한 경우, 부인이 의절해야 할 정상(인척 살인, 상해, 간통 등)을 범한 경우 등이었다.⁴⁶⁾

44)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 223.

45) 위의 책.

46) 정지원, “조선시대 이후 한국의 이혼제도에 대한 일고찰,” 『가족법연구』 27/2(2013), 140-141.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부부는 응당 백년해로(百年偕老)를 다하는 것이 당연한 부부지도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이혼이 성립하는 이유들로서 동성(족보), 남편의 부인 학대 행위, 권력자의 비행, 부부간 신분 문제, 부인의 중범죄 등이 주된 사유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기독교인들 세계에는 이혼 문제에 대한 성경적 성찰이 일었고 기존의 결혼 문화와 가정 풍속도에 주목할 만한 혁신을 가져왔다. 본 장에서는 ‘부부간 평생 의무로서의 결혼’에 관한 논점들로 그레고리의 종신의 의무 논증과 결혼 후 부부의 3중적 의무 논증, 『長老教會婚喪禮式書』 및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과의 상호 접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그레고리의 ‘종신(終身)의 의무’ 논증

그레고리는 결혼의 세 번째 원리로서 부부가 상호 준수해야 할 신성한 결혼의 의무에 대해 논했다. 그는 결혼은 부부간 ‘종신’의 의무를 담은 절대적 구속력을 갖는 약속이라고 했다. 결국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이들을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 그 기한은 ‘한평생’(限平生) 유효하다는 의미이다. 한평생이란 생존해있는 전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이며 일평생과 동의어로 구사되었다. 다만 그레고리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 두 가지 귀책들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음행의 연고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간 가출하여 부부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다. 그는 장기간의 도피는 실상 음행과 다를 바 없다고 간주하여 이를 음행의 사유에 포함시켰고, 따라서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별(死別)에 대해서는 지상에서 부부의 연분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부 중 남편이던 아내이던 생존해있는 자는 재혼이 가능하다고 했다.

혼인은 종신토록 할 약조인데 한 사람부부 중 어느 한 사람-연구자 주이 죽게 되면 그 약조를 자연스럽게 끊을 것이니사별로 인한 부부관계 종결-연구자 주 그러므로 부부 중에 살아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고전7:39-연구자 주 또한 음행한 까닭으로 인하여 끊을 수는 있으나 성경 말씀대로 다른 이유로는 혼인을 갈릴 수 없느니라. 혹은 도망쳐 오랜 기간 돌아오지 아니하면즉 부부의 책무를 방기하면-연구자 주 갈릴 수가 있으니 왜냐하면 버리고 나간 사람을 음행하는 자로 간주하는 것이라(고전7:15-).⁴⁷⁾

그레고리의 ‘종신의 의무’ 논증은 마태복음 19장 9절에 기록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한다. 바울은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어지는 후술(後述) 문장에서는 접속사 ‘데’(δέ, but)와 ‘에이레네’(εἰρήνη, peace)를 구사하여 “그러나(δέ) 하나님은 화평(εἰρήνη)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라고 부연하여 갈라서는 일을 사려깊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칼빈은 “신자들은 만일 불신자인 배우자가 헤어지지 않고 결합되기를 원한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이혼을 원하는 것은 신자의 고백과 위배되기 때문이다.”⁴⁸⁾라고 주석하여 이 문제를 신앙고백 차원에서 조명했다. 핫지(Charles Hodge)는 본 구절에 대해 비록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더라도 부부가 갈라서는 일은 신증을 기해야 하며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라는 심각한 위험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복음은 가족들을 해체시키거나 남편들과 아내들을 갈리게 하기 위하여 계획되지 않았다. 그러

47) 『도덕학』, 165.

48)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Fir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trans. John W. Fraser, ed. David W. Torrance, Thomas F. Torrance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Company, 1973), 150.

므로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에 의해 버림을 당하게 될 때 자유롭게 된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한 이별은 피해야 될 것이다.”⁴⁹⁾

2. 그레고리의 ‘결혼 후 부부의 3중적 의무’ 논증

그레고리는 결혼한 이후 부부가 일평생 힘써 감당해야 할 필연적 의무 들로서 첫째, ‘서로 진실할 것’, 둘째, ‘서로 사랑할 것’, 셋째, ‘서로 도와줄 것’ 등 3중적 의무를 제시했다. 그는 특별히 제2항 서로 사랑할 것을 권고 하는 대목에서 부부는 각자 배우자 이외의 이성(異性)을 경계하여 피차 외도를 금해야 하고 정절과 대의(大義)를 지켜야만 부부 사이에 깊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부가 서로 마땅히 할 만한 것. (중략) (1) 피차 진실할 것: 부부가 된 사람이 피차 서로 믿고 성혼(成婚)한 약조를 진실히 지킬 것이니 만약 진실하지 않으면 성약(成約)한 것을 어기고 가족(家屬)을 파괴(敗壞)하게 하여 모든 사회를 더럽히는 것이니라. (2) 피차 사랑할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부부가 된 사람들이 피차 사랑할 것뿐 아니라 그 사랑을 점점 더 기르고 피차 중하게 여기며 서로를 위해 살기를 힘쓸 것이니 만약 이같이 하고자 하면 항상 조심 하여[부부 사이의 정절과 대의-연구자 주] 전혀 의심이 없게 할 것이라. (3) 피차 도와줄 것: 부부가 된 사람은 꼭 한 몸이 되고 일평생에 할 일도 하나이니 피차 도와주어 이 일을 온전하게 성취할 것이니라.⁵⁰⁾

그런데 그레고리는 ‘결혼 후 부부의 3중적 의무’를 외연(外延)하여 부부간 평생의무로서 ‘특별한 의무’를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특별한 의무’라는 제하에 거시적인 틀에서 남편과 아내가 담당해야 할 본분을 구분하여

49) 찰스 핫지, 김영배·손종국 역, 『고린도전서주석』(서울: 아가페출판사, 1989), 180.

50) 『도덕학』, 167-168.

진술했다. 그는 에베소서 5장, 골로새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등에 근거하여 남편은 ‘건사’ 즉 온 집을 주관하고 보호할 일, 가정경제를 책임질 일 등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갖추어야 할 덕목은 순복, 믿음, 의지(依支)라고 했다.

부부의 특별한 의무: 부부가 된 사람들이 각각 따로 마땅히 할 일이 있나니 남자는 온 집을 주장(主張)하여(主)관을 의미함-연구자 주 보호하고(이는 건사의 의무를 가리킴-연구자 주 여자는 남자에게 순복(順服)하고(엡5:22-23; 골 3:18; 뱀전3:1, 5-연구자 주 믿고 의지(依支)할 것이니라. 남자는 마땅히 가내(家內)에서 쓸 것을 예비하고(가정 운영을 위한 경제에 대한 책무-연구자 주 모든 재료를 합당하게 쓸 것이니라.⁵¹⁾

그레고리는 남편의 의무로서 ‘건사’를 주장했다. 이는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온 집을 주관하고 보호하는 신성한 책무에 해당된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스미스(Kenneth G. Smith와 Floy M. Smith)는 남편의 의무 중 건사에 대해 가정을 운영할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고 남편이 가족들을 돌보고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일이라고 주장한다.⁵²⁾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목할 것은 오늘날 페미니즘 논쟁에서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아내의 ‘순복’이라는 논점이다. 칼빈은 이 순복에 관한 가르침은 결코 남편과 아내 양자 사이의 인격의 고하(高下)나 우열, 불평등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부지도의 질서문제에 관련된다고 보았다. 그는 만일 가정에서 아내의 순복이 사라진다면 결국에는 남편 뿐 아니라 주님께도 청종할 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원리가

51) 위의 책, 168.

52) 케네드 스미스플로이드 스미스, *Learning to be a Woman*, 이해경 역, 『참다운 여성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85.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⁵³⁾ 성경신학자 라이리(Charles Ryrie)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을 높낮이의 관계로 볼 수 없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한다는 것은 종속 상태나 열등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으며, 하나님께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각기 영예로운 지위를 누리게 해주신다고 주장했다.⁵⁴⁾

3. 『長老教會婚喪禮式書』 및 『朝鮮예수敎長老會憲法』과의 상호 접목

『長老教會婚喪禮式書』에 기록된 혼인예식 제7단계 ‘부부서약’은 총 5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다. 먼저 제1단계에서는 자의적 결혼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주례자가 신인(新人)(신랑 혹은 신부-연구자 주에게 대하여 무슨 구애(拘礙)의 유무를 물은즉 신인은 답할 것이라.”⁵⁵⁾ 그리고 “제2단계인 ‘신랑에게 대하여 서약의 초문(初問)과 그의 답(答)’, 제4단계인 ‘신랑에게 대하여 서약의 재문(再問)과 그의 답’, 제3단계인 ‘신부에게 대하여 서약의 초문과 그의 답’, 제5단계인 ‘신부에게 대하여 서약의 재문과 그의 답’을 통하여 부부의 상호 의무에 대해 거듭 질문하고 답변하게 함으로써 서약을 굳게 다짐하는 구도를 갖추었다. 이 서약에는 남편과 아내가 담당해야 할 평생의 의무에 큰 의미를 두었다. 초문에는 ‘일평생 길이’와 ‘종신토록’, 재문에는 ‘한평생 길이’라는 부사구가 기술되었으며 이는 그레고리의 주장대로 결혼이 ‘종신의 의무’라는 논점과 일맥상통에 있다. 주례자의 질문과 신랑신부 측의 답변 순서를 살펴보면 ①(초문)

53) John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trans. T. H. L. Parker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205.

54) 찰스 라이리, *The Role of Women in the Church*, 양은순 역, 『교회에서 여성이 할 일』(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102.

55) 『長老教會婚喪禮式書』, 7.

주례자→(답)신랑, ② (초문)주례자→(답)신부, ③ (재문)주례자→(답)신랑, ④ (재문)주례자→(답)신부)의 구도로 전개된다.⁵⁶⁾ 주례목사는 먼저 신랑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하여 신부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질문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로써 부부서약을 여러 차례 제창하게 함으로써 부부가 수행해야 할 의무를 확고하게 각인시키고자 했다.

이 서약에는 그레고리가 주장한 부부간 종신의 의무와 결혼한 후에 준수해야 할 진실성, 사랑, 도와줌 등 3중적 의무가 고스란히 진술되었으며 특별히 하나님 앞과 증인들(가족 및 하객들) 앞에서 맹서(盟誓)하게 하여 신앙고백적인 의미를 담아내고자 했다. 특이한 것은 초문과 재문에 대한 신랑신부의 답변을 ‘유(唯)」「오직 그렇게 하겠습니다-연구자 주라고 기술함으로써 의미상 결단을 고백하는 답변 형식을 취하여 강조수사법을 구사했다는 점이다. 신랑에게 질문한 초문과 재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부에게 행한 초문과 재문 역시 신랑의 경우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신랑이여, 그대가 이 신부에게 성취(成娶)〔신랑이 신부에게 장가를 감-연구자 주하여 아내로 친양(親迎)〕〔친히 환영함-연구자 주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 세우신 예법대로 결혼식을 행한 후에 그의 일평생 길이 화락(和樂)한 마음으로, 그 처지를 따라 종신토록 동실(同室)하기로〕각 방을 쓰지 않고 한 방에 거함-연구자 주 하나님 앞과 못 증인 앞에서 확실히 작정하느냐? 신랑은 답왈(答曰) 유(唯)라.⁵⁷⁾〔초문〕

신랑 모군(某君)(성명)이여, 그대의 아내된 신부 모씨(某氏)(성씨)를 금일부터 한평생(限平生) 길이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고 도우며 위로하고 고락간

56) 위의 책, 8-11.

57) 위의 책, 8.

(苦樂間)에 교계(敎計)·견주어 살핌, 동고동락할 것·연구자 주치 아니하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大義)와 정조(貞操)를 굳게 잡아 도무지 변치 못할 줄 알고 하나님 앞과 증거하는 못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서약하느뇨? 신랑은 답왈(答曰) 유(唯)라.⁵⁸⁾[재문]

부부간 상호 의무에 대해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 혼례조례 규정에는 성문화된 지침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제7항(‘증인의 동반·혼인증서 교부’)에는 결혼은 식장에 증인들이 충분하게 모여 있는 가운데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식을 치를 것과 예식 후에 신랑신부에게 혼인증서를 교부하는 절차 등이 명시되었다. 그리고 제8항(‘혼인명부’)에는 주례한 목사가 해당 지교회에 항상 결혼명부를 비치하여 됴으로써 이후 분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력을 갖는 증표로 간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⁵⁹⁾

V. 나가는 말: 현재적 시사점들

지금까지 스왈런 선교사가 번역하여 평양신학교에서 강의한 그레고리의 저서 『도덕학』을 중심으로 ‘3중적 결혼의 원리’를 분석했으며 이후 발행된 『長老教會婚喪禮式書』와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과의 상호 접목을 살펴보았다. 그레고리는 ‘부부간 약속으로서의 결혼’, ‘부부간 일부일처제의 결혼’, ‘부부간 평생 의무로서의 결혼’을 3중적 결혼의 원리로 제시했으며 가정을 이루는 신랑신부가 솔선해야 할 결혼생활의 근간으로 보았다. 이후 늦게나마 총회에서 발행하여 최초로 보급한 『長老教會婚喪禮式書』와 헌법서인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에도 ‘3중적 결혼의 원리’가 충실하

58) 위의 책, 10.

59)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 224.

게 반영되었으며 이 저작들은 해방 전 기독교인들의 결혼문화를 정립해 준 중요한 문헌으로 자리매김했다.

첫째, 그레고리는 ‘부부간 약속으로서의 결혼’ 논증에서 5중적 약속으로서 결혼은 신랑신부의 자유의사, 근친결혼의 부당성, 온전한 몸과 마음, 가정을 주관하는 남편의 역량, 사랑의 연을 맺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長老教會婚喪禮式書』 및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에서는 결혼 당사자들의 연령을 중시하여 조혼을 금했고, 근친결혼은 허락하지 않았으며, 결혼 당사자들이 인격적이며 자발적인 사랑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예식순서 가운데 제7단계인 ‘서약의 순서는 예식순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상술했으며 부부간 신앙고백적인 맹서를 담아내었다.

둘째, 그레고리는 ‘부부간 일부일처제의 결혼’ 논증에서 일부일처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라는 점을 들어 ‘혼인은 일남일녀’ 체제라고 천명했으며 이 제도는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 가정교육, 가정의 평화, 자녀 양육 등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일부일처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고유한 창조질서이며 이 질서를 어길 경우 하나님의 성지(聖志)에 불순종하는 패역을 낳는다고 했다. 『長老教會婚喪禮式書』 혼례조례 규정에는 남녀 이성(二性)의 결혼과 단회적 결혼을 규정했으며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에서는 동일한 일부일처제를 적용했고 ‘주필내(必主內)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셋째, 그레고리는 ‘부부간 평생 의무로서의 결혼’에서 먼저 결혼은 종신(終身)토록 의와 책임을 담은 언약이라고 했다. 또한 ‘결혼 후 부부의 3중적 의무’ 논증에서는 ‘서로 진실할 것’, ‘서로 사랑할 것’, ‘서로 도와줄 것’ 등을 논했으며 부부 사이의 깊은 신뢰를 강조했다. 『長老教會婚喪禮式書』에서는 혼인예식 제7단계에서 부부의 상호 의무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적

으로 문답하도록 했으며 종신의 의무를 비롯하여 결혼 후 힘써야 할 진실성, 사랑, 도와줌 등 3중적 의무를 포괄했다.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에서는 증인의 동반·혼인증서 교부, 해교회(該教會) 혼인명부를 증표로 보관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지침들은 결혼관에 나타난 이론(theory)과 실천(practice)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제 본고를 마무리하면서 각별히 기독교윤리학 분야에서 정립하여 교육해야 할 결혼윤리관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의 시사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윤리학 분야에서 이혼문제에 대해 실용적인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한 문헌들에 의하면 부부간 결속은 일평생 혹은 한평생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00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이혼건수는 13만 5천 건에 달하여 하루 평균 370쌍이 갈라섰다. 이혼 평균연령은 남성이 40.2세, 여성이 36.7세이며 20년 넘게 결혼 생활한 노부부의 황혼이혼도 11.3%에 이른다. 이혼 사유로는 불화 75%, 경제문제 11.6%로 집계되었다. 이혼건수는 한국은 2.8쌍으로 OECD 국가들 중 미국(4.2쌍), 영국(2.9쌍)에 이어 3위에 위치한다.⁶⁰⁾ 2016년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이혼 평균연령은 남성 46.9세, 여성 43.3세이며 남성의 기대수명 78.99년, 여성의 기대수명 85.48년을 감안하면 재혼하지 않을 경우 남성은 30년 이상을, 여성은 40년 이상을 홀로 살아야 한다.⁶¹⁾ 남성과 여성이 인격적 교제를 거쳐 가정을 이루지만 점차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만성적인 사회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결혼을 피하여 아예 독신을 선호하거나 계약부부로 사는 경우, 동성혼, 출산을 꺼리는 풍조, 나아가 이혼에 있어서도 합의 이혼, 정략적 이혼, 재산보호 차원의 이혼, 황혼

60) 이광호, “한국이혼율 세계 3위,” 「건강소식」 26/12(2002), 24.

61) 박훈·윤현경, “황혼이혼과 사별의 과제문제,” 「서울법학」 25/1(2017), 379.

이혼과 졸혼(卒婚) 등 갖가지 기괴한 현상들이 대두되면서 부부윤리가 붕괴되고 있다. 그레고리는 『도덕학』에서 창세기 2장과 마태복음 19장에 근거하여 남녀간 일부일처제 결혼을 주장했고, 고린도전서 7장에 기초하여 음행, 장기 가출 외에는 이혼이 불가하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長老教會婚喪禮式書』에서는 부부간 종신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기독교윤리학에서는 부부간 성격과 가치관, 학력의 차이, 재산문제, 두 가문의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 고부간의 불화, 외도와 폭력, 자녀 양육의 문제 등 오늘날 가정들에 나타나는 난제들을 사례별로 고찰하여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 성실하게 부부간 윤리를 실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둘째, 기독교윤리학에서 ‘결혼신학’(marriage theology), ‘부부신학’(marital theology), 혹은 ‘가정신학’(home theology) 분야를 적극 개척하여 목회현장에서 담론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결혼신학이라는 용어는 널리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주목할 만한 국내 연구로서 2017년에 박은주의 “결혼신학의 흐름과 교회의 적용”이 발표되었다. 그는 결혼신학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결혼신학이라 함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결혼신학은 전통적 이론신학(신구약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등)에 속하지만 실제적 삶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실천신학 또는 목회신학에 더 가깝다.”⁶²⁾ 그는 이 글에서 취직과 결혼 그리고 출산에 무관심한 에코 세대(echo generation), 일명 3포(三抛) 세대를 겨냥하여 계약으로서의 결혼모델, 교회가 주관하는 성례로서의 결혼모델, 소명과 언약으로서의 결혼모델 등을 제시했다.⁶³⁾ 그레고리의 『도덕학』, 『長老教會婚喪禮式書』, 『朝鮮예수교長

62) 박은주, “결혼신학의 흐름과 교회의 적용,” 『신학과 실천』 53(2017), 39.

63) 위의 논문, 33-59.

老會憲法』 등에 나타난 결혼신학 혹은 부부신학에 적용할 만한 주요주제 들로서 신랑신부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 근친결혼의 부당성, 온전한 몸 과 마음, 결혼 전 정조와 순결성, 가정을 이끌어야 할 남편의 역량, 남편과 아내가 별도로 감당할 일, 부부지정의 동인으로서의 사랑, 신앙고백을 담 은 언약과 맹서, 남녀 신자들 사이의 결혼, 부부간 인격체로서의 연합, 언약사상에 입각한 결혼관 정립, 종신의 책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논지들은 오늘날 기독교인 부부들에게 여전히 성경적 부부윤리를 성실하 게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심장한 시사점들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그레고리, 다니엘 S. *Christian Ethics: The True Moral Manhood and Life of Duty-a Text-book for Schools and Colleges*. 윌리엄 L. 스왈린 역. 『도덕학』. 평양: 조선예수교장로회, 1915.
- 김건태. “18세기 초혼과 재혼의 사회사-단성 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1(2004), 195-223.
- 김영. “한일 고대의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新猿樂記』의 〈次の妻〉를 중심으로 -.” 『일본연구』 11(2009), 109-129.
- 라우센부쉬, 윌터. *Social Principle of Jesus*. 고영환 역. 『야소의 사회훈』. 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0.
- 라이리, 찰스. *The Role of Women in the Church*. 양은순 역. 『교회에서 여성이 할 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 맥도날드, D. A. *The Social Idea of Christinity*. 최상환김관식 역. 『기독교사회 사상』. 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26.
- 박경. “개화 지식인들의 조혼(早婚)에 대한 인식.『독립신문』의 논설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16(2012), 69-96.
- 박윤선. 『창세기 출애굽기 주석』. 서울: 영음사, 1974.
- 박은주. “결혼신학의 흐름과 교회의 적용.” 『신학과 실천』 53(2017), 33-59.
- 박훈-윤현경. “황혼이혼과 사별의 과세문제.” 『서울법학』 25/1(2017), 377-428.
- 박희진. “양반의 혼인연령: 1535-1945-혼서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40(2006), 3-20.
- 비숍, 이사벨라 B. *Korea and Her Neighbors*, 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서울: 살림, 1999.
- 솔타우, 테오도레 S. *A Straight Road to Christian Truth*. 『신자생활의 침경』. 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6.
- 스미스, 케네드스미스, 플로이드. *Learning to be a Woman*. 이해경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 스토커, 제임스. *The Ethics of Jesus*. 김필수오천영-윌리엄 M. 클락 역. 『그리스도 윤리표준』. 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29.

- _____. *The Example of Christ*. 김필수오천영·윌리엄 M. 클락 역. 『그리스도 모범』. 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29.
- 아펜젤러, 헨리 G. *Bring to the Light and Liberty*. 노중해 역. 『자유와 빛을 주소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 안수강. “그레고리(Daniel S. Gregory)의 『도덕학』에 나타난 ‘부모-자녀 간 상호 삼중적(三重的) 의무’ 분석.” 『신학과 실천』 86(2023), 633-673.
- _____. “정경옥(鄭景玉)의 실용주의(實用主義) 신학 분석.” 『기독교사회윤리』 43(2019), 153-187.
- 안점식.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인간성 이해와 이에 대한 기독교 철학적 성찰-세계관의 스펙트럼과 세계관 변화의 관점에서.” 『ACTS 신학저널』 27(2016), 77-117.
- 이광호. “한국이혼율 세계 3위.” 『건강소식』 26/12(2002), 24-25.
- 이성임. “조선시대 량반(兩班)의 축첩현상(蓄妾現象)과 경제적(經濟的) 부담.” 『고문서연구』 33(2008), 319-345.
- 이순택. “최근 조선의 평균 결혼연령 연구.” 『靑年』 11/5(1931), 6-9.
- 이장형. 『기독교윤리학의 한국적 수용과 정립』. 성남: 북코리아, 2016.
- _____. “한국기독교 초기 윤리학교과서 문헌해제 및 한국적 수용과정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18(2009), 317-351.
- 전미경. “개화기 축첩제 담론분석.” 『가정과 삶의 질 연구』 19/2(2001), 67-82.
- 정지원. “조선시대 이후 한국의 이혼제도에 대한 일고찰.” 『가족법연구』 27/2(2013), 140-141.
- 朝鮮예수敎長老會. 『長老教會婚喪禮式書』. 경성: 조선기독교창문사, 1925.
- _____. 『長老教會 婚喪禮式書』, 1924.
- 클락, 찰스 A. 편. 『朝鮮예수敎長老會憲法』. 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22.
- 한치진. 『基督教人生觀』. 경성: 철학연구사, 1934.
- 햇지, 찰스. 김영배·손종국 역. 『고린도전서주석』.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9.
- 홍양희. “식민지 조선에서 일부일처 법률혼과 이혼 소송에서의 ‘축첩’ 문제: 제국 일본의 사례와 관련하여.” 『역사연구』 51(2024), 245-283.
- Calvin, John. *John Calvin's Commentaries: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trans. T. H. L. Parker,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 _____. *Calvin's Commentaries: The Fir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trans. John W. Fraser, ed. David W. Torrance, Thomas F. Torrance.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Company, 1973.
- _____. *John Calvin's Commentaries: Genesis(I)*. trans. John King.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48.
- Henry, Matthew. *Matthew Henry's Commentary: Matthew to John*.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Company, n. d.

논문투고일: 2025년 06월 28일

심사개시일: 2025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5년 08월 11일

• 국 문 초 록 •

이 연구에서는 그레고리의 『도덕학』에 진술된 결혼의 3중적 원리에 대하여 분석하고 『長老教會婚喪禮式書』(1924)와 『朝鮮예수敎長老會憲法』(1922)에 진술된 3중적 원리와의 상호 연결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간 약속으로서의 결혼’ 논증에 관해서는 신랑신부의 자유의사, 근친결혼의 부당성, 온전한 몸과 마음, 가정을 이끌어야 할 남편의 역량, 부부간 애정에 대하여 살폈다. 둘째, ‘부부간 일부일처제의 결혼’ 논증에 관해서는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 가정교육, 가정의 평화, 자녀 양육, 창조 의 질서, 주 안에서의 결혼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셋째, ‘부부간 평생 의무로서의 결혼’ 논증에 관해서는 부부간 한평생 종신언약(終身言約), 진실성, 사랑, 협동을 다루었다. 넷째, 본 연구자는 본고에서 천착한 논점들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혼문제, 결혼신학, 부부신학, 그리고 가정신학 분야 연구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들을 제시했다.

주제어: 다니엘 S. 그레고리, 『도덕학』, 『長老教會婚喪禮式書』, 『朝鮮예수敎長老會憲法』, 3중적 결혼의 원리
